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7 선고 2020나7397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7 선고 2020나7397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7 선고 2019가단520817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7. 6.

판결 선고 2021. 8. 17.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7. 선고 2019가단520817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8. 5. 3.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주식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와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진원

판사이상률

판사권소영

별지